

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

일부개정 2020. 4. 2. 규정 제821호

1. 개정사유

- 체육과학연구소 산하 연구조직 ‘건강증진센터’의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여 관련 공간을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초빙교수의 연구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연구소 조직의 ‘건강증진센터’를 ‘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’로 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- ‘건강증진센터’의 용도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항 수정(안 제4조제3항제8호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체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2020.3.13.)
- 라. 불 입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 개정문

「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본문 중 “건강증진센터”를 “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”로 한다.

제4조 제3항 제8호 본문 중 “건강증진센터는 엘리트선수,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, 운동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위한 연구”를 “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”으로 한다.

부 칙(제821호, 2020. 4. 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운동생화학실, 운동생리학실, 운동역학실, 스포츠심리학실, 종합체력측정실, 인문사회연구센터, 체육영재센터, <u>건강증진센터</u>, 올림픽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<u>건강증진센터는 엘리트선수,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, 운동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위한 연구</u></p>	<p>제4조(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</u>,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건강증진·산학협력중점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</u></p>
	<p>부 칙(제821호, 2020. 4. 2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